

第9次 政策討論會 資料

인권 자료실		
통독인	분류기호	자료번호
ws	A4	59

障碍人文化暢達을 為한 便宜施設 改善方案 摸索 政策討論會

- 일 시 : 1994년 4월 27일(水) 14:00~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韓國建設政策研究院

전화 : 785-5071~2, FAX : 785-5070

韓國建設政策研究院
院長
社團法人
金 浩 一
院會議員

障礙人文化暢達을 為한 便宜施設改善方案摸索 政策討論會

- 일 시 : 1994년 4월 27일(水) 14:00~17: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社團法人 韓國建設政策研究院
院長 國會議員 金 浩 一

討 論 會 日 程

○開會式(14:00~14:20)

- 국민의례
- 개회사
- 격려사

○主題發表(14:20~15:00)

- 발표자
박용환(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주제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指定討論(15:00~16:20)

- 사회자: 심우갑(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 토론자:
김종영(계명대 건축학과 교수)
남일(건설부 건축기획관)
송항섭(보사부 사회복지심의관) 국립사회복지원
신현순(이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장세양(공간종합건축사무소 소장)
※가, 나, 다順

○自由討論(16:20~16:55)

○閉會式(16:55~17:00)

政策討論會를 開催하면서



존경하는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참가자 여러분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제1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유관단체들이 '장애인을 내가족처럼 생각
하자'고 목청을 높이고 여러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조차 기본적인 장애인 숫자와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장애인 복지는 여전히 사회의 관심밖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이 수도권지하철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단 1곳 뿐이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도와 유도블럭이 설치된 곳은 4곳 뿐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정상인들과 똑같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모색
되어져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코자 모든 건축물의 시공시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전 단계로
斯界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을 모시고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障礙人文化
暢達을 為한 便宜施設 改善方案 摸索 政策討論會」를 개최키로 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가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통해 장애인문화 창달을 위한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1994. 4.

社團
法人
韓國建設政策研究院
院長
國會議員 金 浩 一

장애인 문화 창달의 계기가 되기를…

인간의 장애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고대·중세·근대를 지나오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그들의 생존권까지도 박탈당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한갓 동정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만 있지 자주적 권리를 갖춘 인격체이며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은 없는 실정입니다. 활동이 가능한 분들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겠으나 중증장애인에게 재가(在家) 장애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88년 서울 장애자 올림픽”을 계기로 비로소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과 정부에서도 연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장애인들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활의욕을 북돋우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사회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를 했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게도 탁월한 문화가 있고, 이제는 장애인 문제도 복지차원만을 논하지 말고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참여가 가능하며 그것을 통한 재활의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가를 논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들의 문화 창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급선무가 되어버린 최소한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편의시설의 확충임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정책 토론회에서 편의시설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며 주제발표자의 이 방면에 관한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토론자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참가자 여러분들의 노력도 함께 하여 정부가 지향해야 할 장애인복지사업의 실천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이 나라에 장애인의 아름다운 문화가 꽂피어나는데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4. 4.

사단
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서 영 훈

장애인 편의시설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중심으로—

박 용 환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1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유효공간 및 동작범위	2
3. 통로상의 돌출물	4
4. 장애인 전용주차장	4
5. 연석경사로	5
6. 경사로	5
7. 계단	6
8. 엘리베이터	8
9. 에스컬레이터	9
10. 리프트	10
11. 핸드레일	10
12. 출입문	11
13. 식수대	12
14. 화장실	13
15. 변기	14
16. 세면대	15
17. 욕실	17
18. 샤워실	17
19. 카운터 · 작업대	18
20. 수납시설	19
21. 관람석	19
22. 숙박시설	20
23. 교통시설	21
24. 기타시설물	21
25. 표시 및 안내	23

KSFD 1 머리말

점차 우리들의 생활환경 – 都市, 建築空間이 高度의 適應能力을 強要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은 「보다 빠르고」, 「보다 크고」, 「보다 기능적」인 것만을 追求하면서 새로운 價值觀을
形成한지도 오래 된 것 같다. 建築의 本質이 人間의 個性, 傳統, 人間性에 바탕을 둔다면,
장애인만을 위한 空間 역시, 비단 장애인만을 위한 空間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生活空間으로 다시 돌아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88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意識이 크게 향상되고, 장애인 관련 복지법이나 制度의 整備가
발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 또한 어느 때 보다도 重要視되고
있다.

이러한 現時點에서 생각할 때, 당연히 從來의 偏見과 差別에서 脫皮하여 보다 적극
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사회 각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동시에 都市,
建築空間 속에서 장애자의 동작, 행위, 행동이 자유스러울 수 있는 건축적 配慮가 절실히
要求되는 때라고 생각된다.

本稿는 이상에서 말한 生活環境의 改善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동작, 행위, 행동의 특성을
고려한 空間的 基準의 구체적인 設定을 目的으로 現代 先進諸國의 建築基準을 調査
分析하여 우리들 나름대로의 基準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KSFD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유효공간 및 동작범위

2.1 휠체어 통과폭

- 휠체어 한대가 통과 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은 900mm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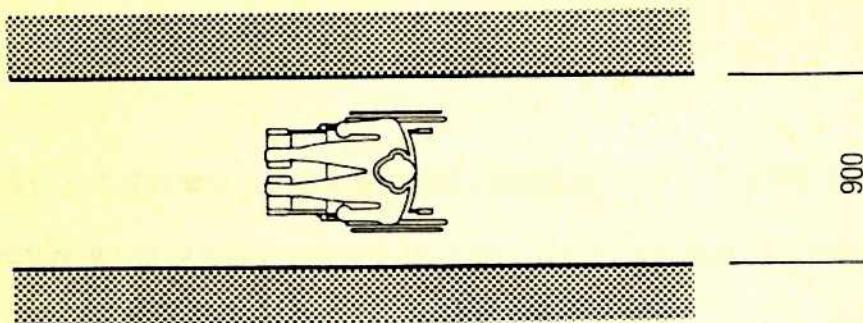


그림 2-1

2.2 휠체어 회전을 위한 최소바닥면적

- 휠체어의 회전을 위한 최소 바닥면적의 유효직경은 1500mm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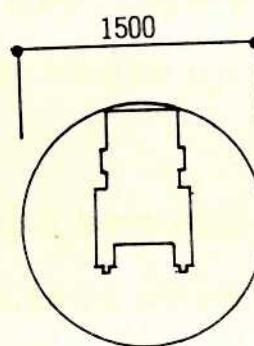


그림 2.2

2.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최소바닥면적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최소 유효 바닥면적은 750mm X 1200mm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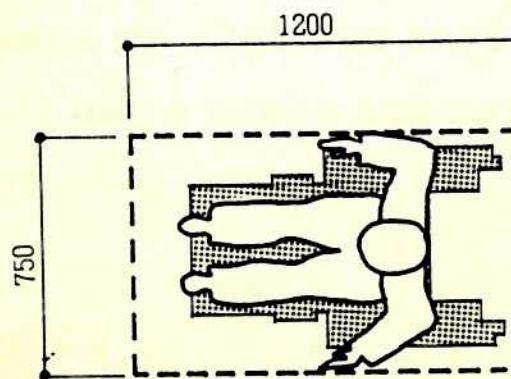


그림 2.3

2.4 전면접근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전면접근시 도달가능 최대높이는 1200mm이하, 최소높이는 400mm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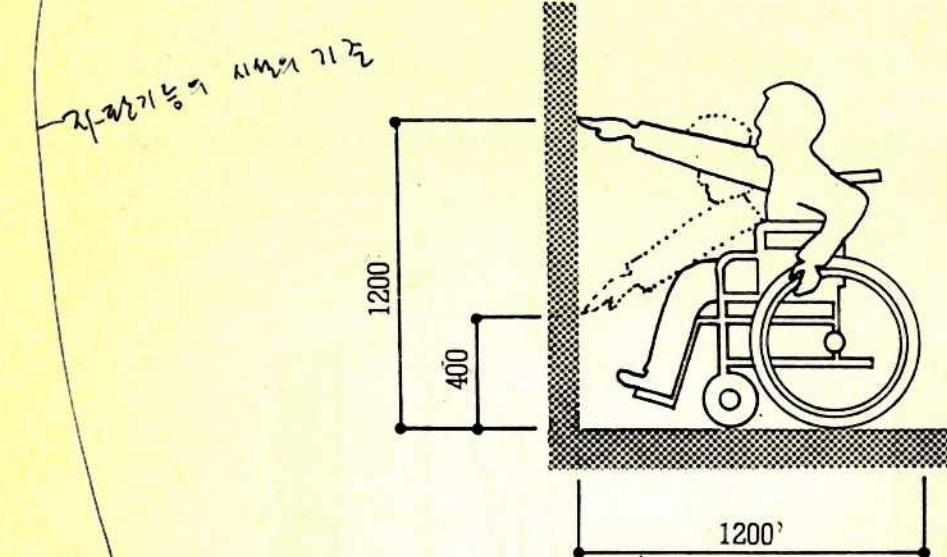


그림 2.4

2.5 측면접근

-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측면접근시 도달가능 최대높이는 1300mm이하, 최소높이는 250mm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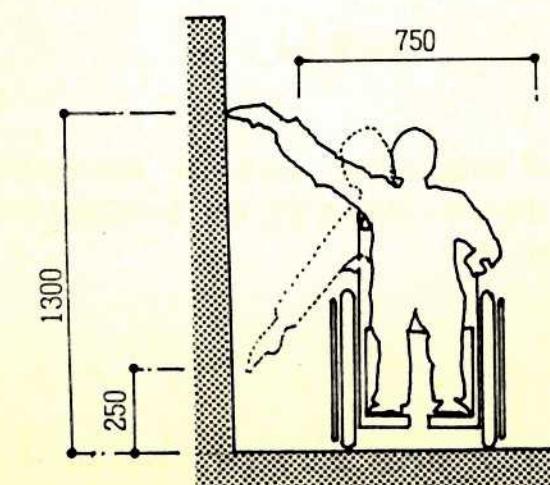


그림 2.5

KSED 3 통로상의 돌출물

3.1 일반사항

- 벽면이나 기둥등으로부터의 돌출물은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단, 이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돌출물로 인하여 적어져서는 안된다.

3.2 돌출폭

-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650mm~ 2000mm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100mm이하로 한다.
-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650mm~ 2000mm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300mm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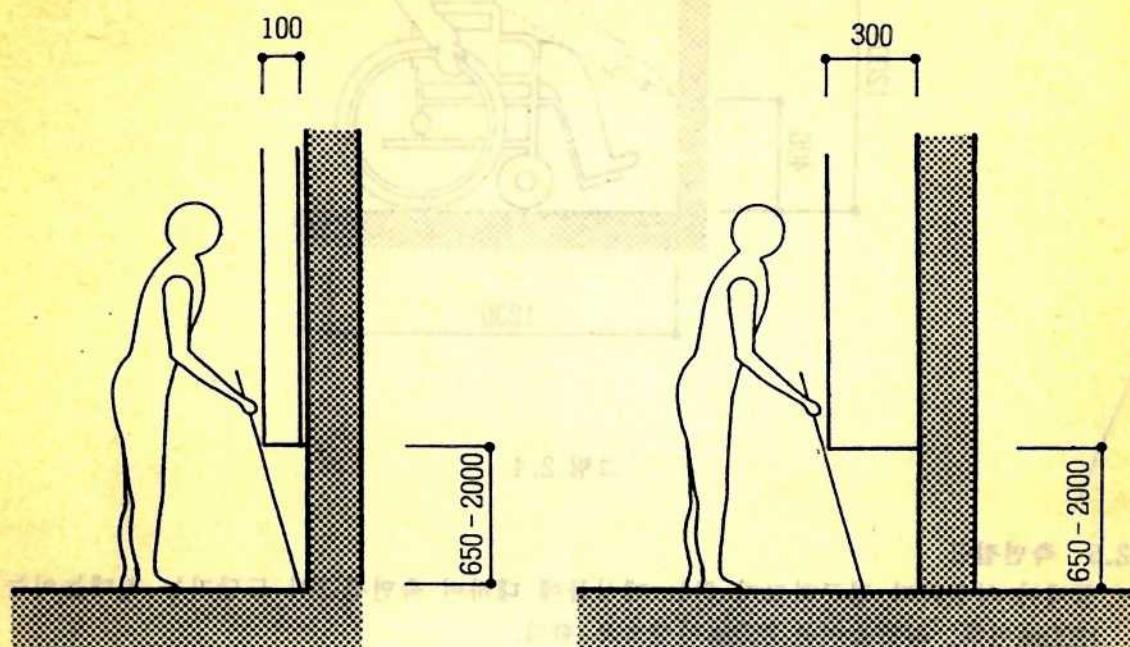


그림 3.1

3.3 통로상부의 돌출물

- 통로는 바닥면에서 높이 2000mm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한다. 단, 유효높이 2000mm이내에 돌출물이 있을경우,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650mm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이나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KSED 4 장애인 전용주차장

4.1 일반사항

-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경사로가 설치된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4.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크기

-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크기는 3,300mm X 5,000mm이상으로 한다.
- 휠체어 사용자 및 보행자를 위한 유효폭 1400mm이상의 안전 통로를 주차장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설치한다.

4.3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유도 및 표시

-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위치를 표시한다.
-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바닥면이나 표시판등에 장애인 심벌마크를 표시한다.

KSED 5 연석경사로

5.1 일반사항

- 횡단보도에서 차도와 보도간에 단차가 있을 경우 연석경사로를 설치한다.
- 연석경사로는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연석경사로의 시작, 끝나는 부분에는 감지용 바닥재료를 설치한다.

5.2 경사

- 연석경사로의 경사는 1:12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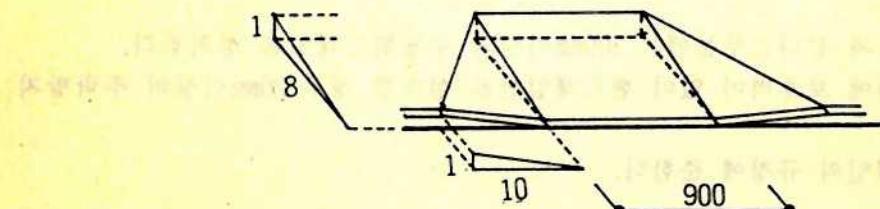


그림 5.2

5.3 최소유효폭

- 연석경사로의 최소유효폭은 사측면을 제외하고 900mm이상으로 한다.

5.4 바닥마감

- 연석경사로의 바닥면은 평탄하고 미끄럼지 않게 한다.
- 사측면을 포함해서 연석경사로의 전체 폭과 깊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감지용 바닥재료를 설치해야 한다.

5.5 연석경사로의 사측면

- 연석경사로의 사측면의 최대경사는 1:10이하로 한다.

KSED 6. 경사로

6.1 일반사항

-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는 경사로를 설치한다.
- 경사로는 가능한 한 완만한 구배로 하고 계단을 병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옥외 경사로와 진입로는 물이 보도표면에 고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 장애인 전용시설에서는 경사로위에 지붕을 설치한다.

6.2 구배

- 경사로의 구배는 실내의 경우 1:12 이하로 하고 옥외의 경우는 1:20 이하로 한다.
- 단차가 750mm이하인 경사로의 구배는 1:12 - 1:8까지 완화할 수 있다.

6.3 경사로의 유효폭

- 경사로의 유효폭은 1200mm 이상으로 한다.

6.4 경사로 참

- 참의 길이는 최소 1500mm이상으로 한다.
- 참에서 진행방향을 바꿀 경우 참의 최소유효바닥면적은 1500mm X 1500mm이상으로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는 1,500mm X 1,500mm이상의 수평바닥면적을 확보한다.

6.5 경사로의 핸드레일

- 고저차가 150mm 이상이거나 경사로의 길이가 1,800mm 이상일 때는 양쪽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 경사로의 시작부분과 끝나는부분에는 300mm이상의 수평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가장자리에 보호벽이 없이 핸드레일만을 설치할 경우 20mm이상의 추락방지 턱을 설치한다.
- 세부사항은 핸드레일의 규정에 준한다.

6.6 바닥재료

- 경사로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재료로 한다.

KSFID 7 계단

7.1 일반사항

- 계단은 직선계단혹은 꺽임계단으로 하고 나선계단이나 회전계단은 피하도록 한다.

7.2 유효폭

- 계단및 참의 유효폭은 1200mm이상으로 해야한다.

7.3 디딤판과 챤판

- 챤판의 경사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한다.
- 챤판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동일 계단에서는 챤판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하게 한다.

7.4 계단코

- 계단코는 20mm이상 돌출하지 않아야 한다.
- 계단코에는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한다.

7.5 핸드레일

- 핸드레일은 계단의 양측에 연속해서 설치한다.

- 경사면에 설치된 핸드레일의 각 단부에는 300mm이상의 수평핸드레일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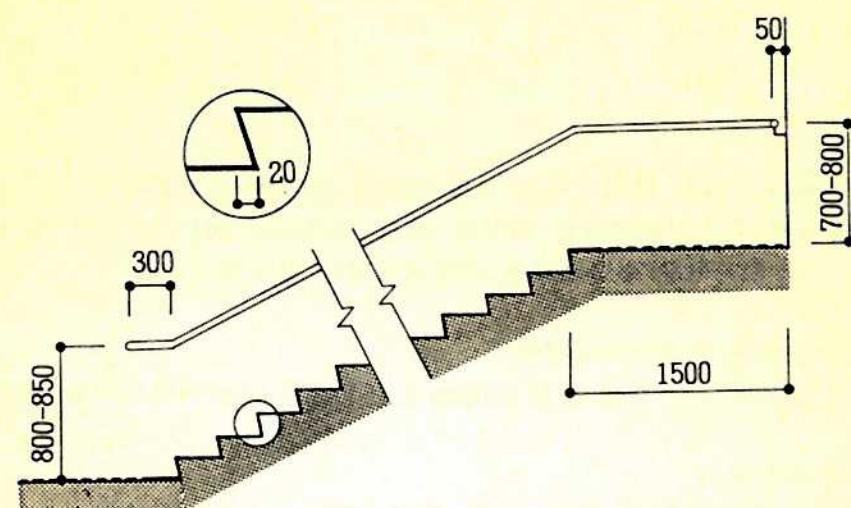


그림 7.5

- 핸드레일에 관한 다른 세부사항은 핸드레일의 규정에 준한다.

7.6 계단참

- 참에는 구배나 단차가 없어야 한다.

7.7 바닥마감

- 계단의 바닥면은 평탄하고 미끄럼지 않은 재료로 한다.

7.8 추락방지 턱

- 계단의 양쪽에는 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핸드레일만을 설치할 때는 핸드레일 하부에 20mm이상의 턱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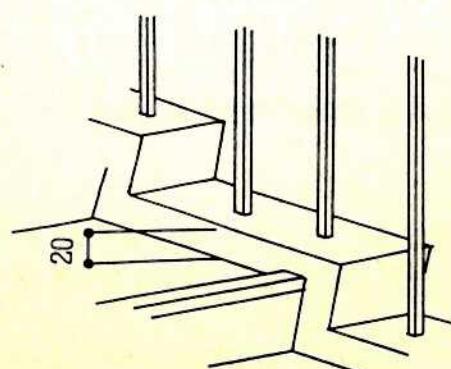


그림 7.8

7.9 표시

-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바닥에는 점형블록의 바닥재를 설치하거나 혹은 마감재료를 변화시킨다.
- 핸드레일의 양단부 및 연속하는 핸드레일의 굽절부분에는 충수 및 위치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KSFID 8 엘리베이터

8.1 일반사항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에서 에스컬레이터나 경사로 또는 리프트가 없이 계단만 설치된 경우는 장애인을 위한 수직이동 수단으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8.2 엘리베이터 전면의 유효바닥면적

-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승강을 위한 1500mm X 1500mm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8.3 엘리베이터의 크기

- 엘리베이터는 내부 유효폭 1500mm, 유효깊이 1400mm,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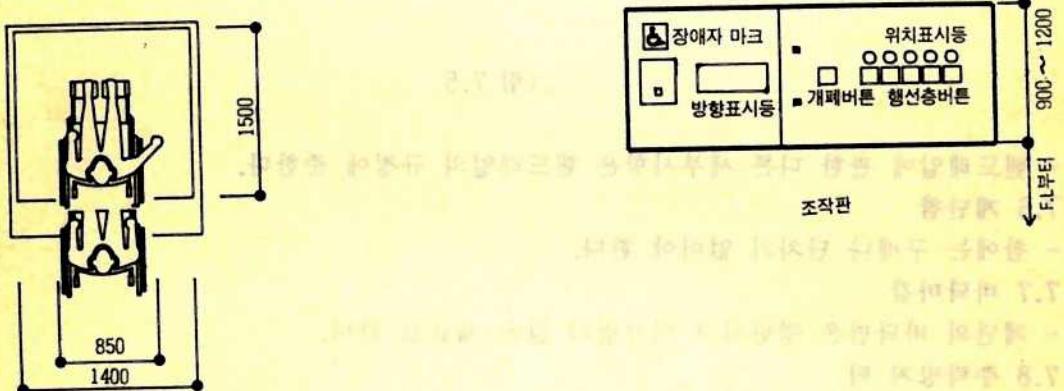


그림 8.3

8.4 출입문 유효폭

-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유효폭은 900mm 이상으로 한다.

8.5 엘리베이터문의 개폐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은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한다.
- 광감지식 개폐장치는 바닥면위 300mm에서 1400mm까지의 물체를 감지하여 작동하도록 한다.
-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는 이용자가 출입문의 개폐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동식의 개폐조작버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6 간격과 단차

- 건물바닥면과 엘리베이터 바닥면의 단차는 가급적 없애도록 하고 건물바닥과 엘리베이터와의 간격은 20mm이하로 한다.

8.7 보호장치

- 사람이나 물체가 엘리베이터 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문을 다시 여는 되열림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8.8 엘리베이터의 설치물

- 엘리베이터내부의 전용조작반은 양측면에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없는 경우는 휠체어 진입 방향의 전면에 조작반을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휠체어가 방향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휠체어 진입방향의 전면에 출입구 확인용 거울을 부착한다. 거울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거울면 또는 강화유리 등 잘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엘리베이터 호출버튼은 조작하기 쉽고 템프가 내장된 전용버튼으로 하고, 점자를 부착한다.
-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조작반, 비상벨, 인터폰등은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쉽게 닿는 바닥면위 900mm~1200mm의 높이에 설치한다.
-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핸드레일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8.9 표시

- 엘리베이터 홀과 내부에는 도착층의 표시를 점멸등과 음성신호로 한다.
- 조작반, 인터폰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승강장의 호출버튼 전면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등의 감지용 바닥재를 설치한다.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심볼마크를 부착한다.

KSFID 9 에스컬레이터

9.1 일반사항

-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에스컬레이터는 KSFID 9의 규정에 따른다.

9.2 핸드레일

- 에스컬레이터 양쪽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에스컬레이트의 디딤판의 바닥단차가 없는 수평부분에는 수평 이동핸드레일을 1200mm이상 연장하여 설치한다.
- 에스컬레이트의 승강구의 수평 이동핸드레일 앞에는 1000mm이상의 수평 고정핸드레일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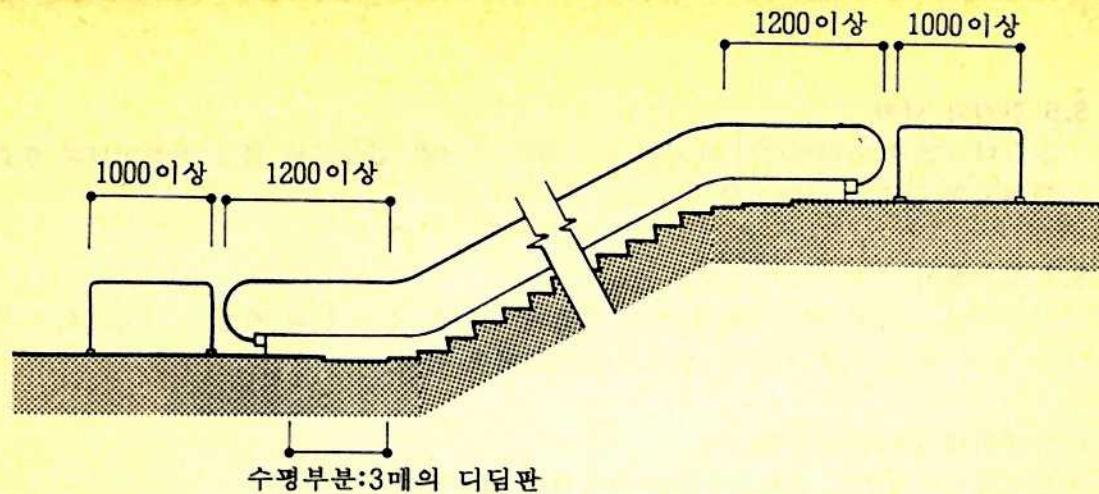


그림 9.3

9.4 디딤판

- 에스컬레이터의 상하 양단부에는 3매 이상의 디딤판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KSF D 10 리프트

10.1 일반사항

- 리프트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단차해소를 위한 보조장치의 의미를 지닌다.
- 단차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써 엘리베이터, 계단, 경사로등에 리프트를 설치 할 수 있다.
- 리프트의 설치는 수직리프트나 경사리프트를 설치한다.

KSF D 11 핸드레일

11.1 일반사항

- 핸드레일은 장애인등의 유도, 낙하방지, 이동동작의 보조등에 대해서 유효한 설비로서 형태, 크기, 재료, 설치위치등을 용도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1.2 핸드레일의 크기와 간격

- 핸드레일의 외경이나 폭은 32mm ~ 38mm로 한다.
- 핸드레일을 벽에 설치할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0mm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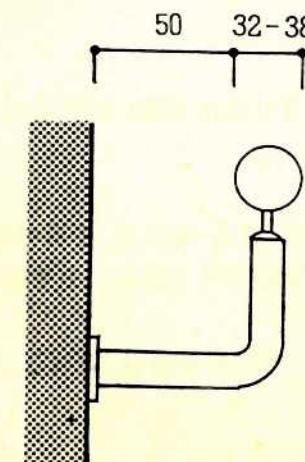


그림 11.2

11.3 핸드레일 높이

- 핸드레일의 높이는 800mm ~ 850mm 이내로 하고, 이중으로 설치할 경우의 높이는 상단은 850mm 정도, 하단은 650mm 정도로 한다.

11.4 핸드레일의 단부

- 핸드레일이 연속되지 않을 경우 핸드레일의 단부는 충돌시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11.5 표시

- 핸드레일의 양단 및 연속하는 핸드레일의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SF D 12 출입문

12.1 일반사항

- 건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은 KSF D 12의 규정에 준한다.
- 장애인용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문을 설치한다.

12.2 유효폭

- 출입문의 유효폭은 850mm 이상으로 한다.
-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는 유효폭 보다 300m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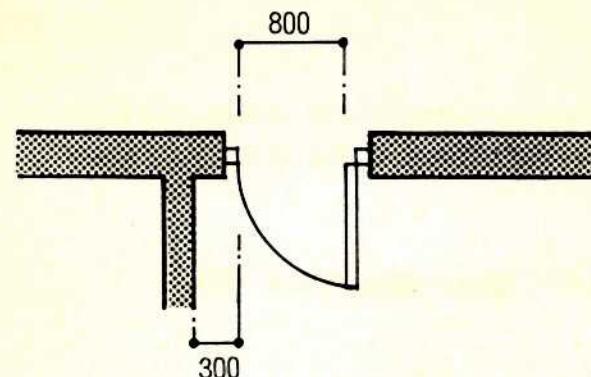


그림 12.2

12.3 여닫이문

- 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할 경우는 닫힘시간을 최소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한다.

12.4 자동문

-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 기폐기작동장치는 시각장애인, 휠체어 사용자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능한 한 감지범위를 넓게 한다.

12.5 연속된 출입문

- 연속된 출입문 사이의 유효거리는 1200mm 이상으로 한다.
- 단,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 1200mm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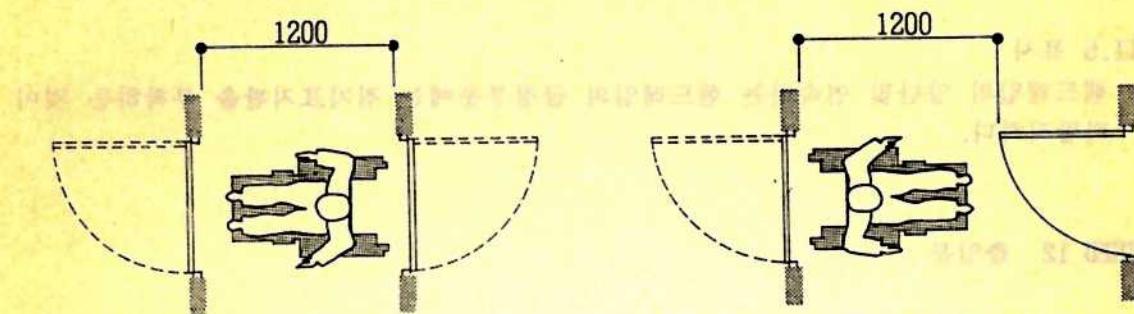


그림12.5

12.6 문의 손잡이

- 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에서 800mm~850mm의 높이에 설치한다.
-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직 또는 수평의 긴 봉형이 바람직하다.

KSFID 13 식수대

13.1 일반 사항

- 식수대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통로상에 설치된 식수대는 KSFID 3의 규정에 준한다.

13.2 분출구 높이

- 분출구 높이는 바닥면에서 700mm~800mm 정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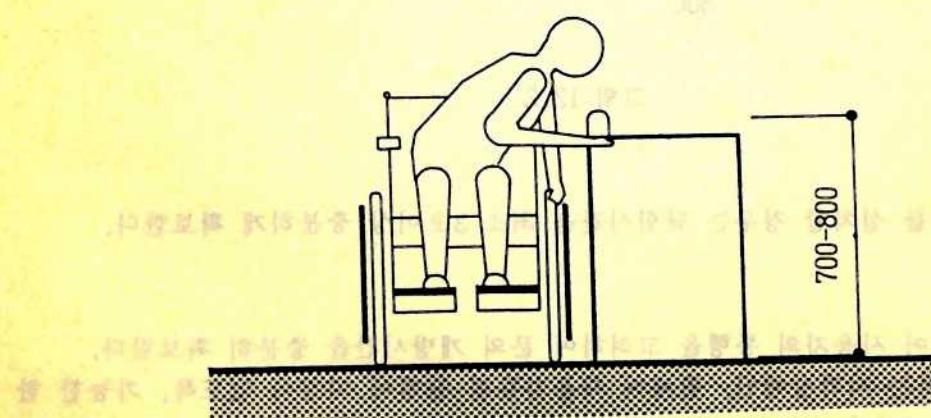


그림 13.2

13.3 조작기

- 식수대의 조작기는 상지장애인등이 사용하기 쉬운 광감지식, 버튼 또는 레버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4 유효 바닥면적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식수대 전면에 750mm X 1200mm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KSFID 14 화장실

14.1 일반사항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부스의 크기는 다음 ㄱ) ~ ㄷ)의 각 항으로 하고 건물의 용도 및 성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ㄱ) 2000mm X 2000mm

ㄴ) 1000mm X 1800mm

ㄷ) 800mm X 1200mm

단, 1) ㄱ, ㄴ은 휠체어 이용자 고려한 경우의 부스의 크기

2) ㄴ과 ㄷ의 채택은 화장실 출입문으로의 접근이 전면접근일 경우에 한한다.

3) ㄱ과 ㄴ의 경우는 내부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는다.

4)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출입문의 형식은 주름문이나 미닫이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2 출입문

-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850mm 이상으로 한다.
- KSFID 14.1항의 ㄱ과 ㄴ의 부스의 경우는 출입문의 폭을 800mm 이상으로 한다.

14.3 표시

-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의 입구에는 장애인 심볼마크와 남녀별 구분표시 및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
- 사용중 표시는 잠금장치와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하고 눈에 띄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14.4 바닥재료

-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럼지 않은 재료로 한다.

KSFID 15 변기

15.1 대변기

15.1.1 일반사항

- 변기는 양변기로 하고 바닥부착형 또는 벽걸이형으로 한다.
- 바닥부착형은 휠체어의 접근을 위하여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한다.

15.1.2 대변기

- 변기의 높이는 휠체어의 앉는면 높이와 동일한 400mm~450mm로 한다.
- 변기의 설치위치는 전면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KSFD 14.1항의 7 항의 경우는 휠체어로부터 변기로 이동하여 앉을 수 있도록 변기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750mm이상의 여유폭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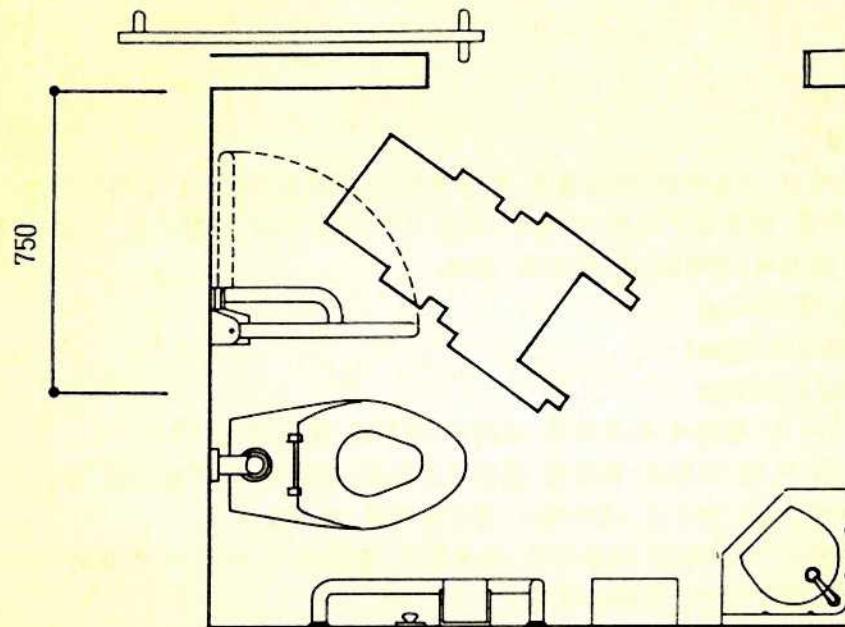


그림 15.1.2

15.1.3 대변기용 핸드레일

- 핸드레일은 변기의 양쪽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한다.
- 수평핸드레일의 높이는 휠체어의 팔걸이와 동일한 650mm~700mm의 높이에 설치한다.
- 수직핸드레일의 설치범위는 600mm - 1500mm정도의 높이로 한다.
- KSFD 14.1의 7 항의 화장실내에 설치하는 수평핸드레일은 한쪽을 회전식으로 하고 좌우핸드레일의 설치간격은 700mm정도로 한다. 단 바닥에 부착한 수평핸드레일의 지지대가 휠체어의 이동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수직핸드레일은 벽에 고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바닥에 고정할 경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핸드레일에 대한 세부사항은 KSFD 11의 규정에 준한다.

15.1.4 기타 설치물

- 세정장치는 레버식, 누름버튼, 광감지식등 조작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 세정장치, 비상호출버튼, 휴지걸이등은 변기나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SFD 14.1의 7 항의 경우는 천장에서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2 소변기

15.2.1 일반사항

- 장애인용 소변기는 화장실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2.2 소변기의 설치

- 소변기의 좌우에 설치하는 핸드레일은 간격 600mm정도, 높이 800mm~850mm정도로 하고 몸을 기댈수 있도록 전면핸드레일보다 300mm정도 더 돌출시키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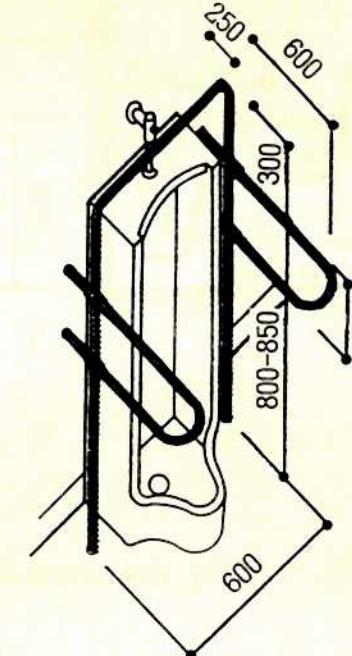


그림 15.2.2

- 소변기 전면 핸드레일은 가슴을 기댈수 있도록 돌출폭을 250mm정도로 하고 설치높이는 1100mm~1200mm로 한다.
- 핸드레일의 하단부는 휠체어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클러치를 걸기 쉽도록 설치한다.
- 핸드레일에 대한 세부사항은 KSFD 11의 규정에 준한다.

KSFD 16 세면대

16.1 일반사항

- 휠체어사용자등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1개 이상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세면대에 접근할수 있도록 세면대 전면에 휠체어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한다.

16.2 세면대의 높이

- 휠체어 사용자용 세면대의 하단높이는 650mm 정도로 하고, 세면대 하부에는 무릎이나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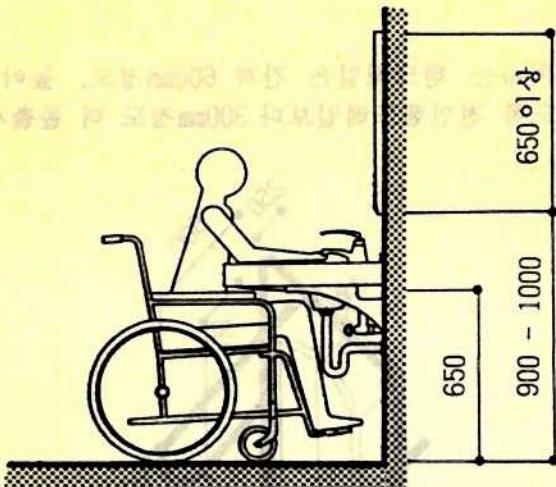


그림 16.2

16.3 핸드레일

- 클러치 사용자등의 하지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세면대의 좌우에는 기댈 수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핸드레일의 설치높이는 세면대 상단보다 50mm정도 높게 한다.
- 핸드레일의 간격은 600mm정도로 하고, 세면대 전면에는 100mm~150mm정도의 길이를 돌출시켜 설치한다.
- 핸드레일에 대한 세부사항은 KSED 11의 규정에 준한다.

16.4 수도꼭지

- 래버식, 광감지식등 상지장애인등이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6.5 거울

- 세면대의 거울은 650mm이상의 길이로서 하단높이가 900mm~1000mm가 되게 설치한다.

16.6 바닥 마감재료

-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KSED 17 욕실

17.1 일반 사항

- 장애인이 이용하는 욕실은 욕실의 형태, 부착물, 수도꼭지, 여유공간등에 적절한 배려를 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는 탈의실, 씻는 곳, 욕조에 대한 일련의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17.2 출입구(문)

- 출입구(문)의 유효폭은 850mm 이상으로 한다.

17.3 욕실의 바닥

- 욕실의 바닥면은 탈의실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 욕실 및 욕조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17.4 욕조의 높이와 깊이

- 욕실 바닥에서 욕조까지의 높이는 휠체어의 앉은면 높이인 400~450mm로 한다.
- 욕조의 깊이는 550mm 정도로 한다.

17.5 핸드레일

- 욕조와 씻는 곳의 주위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핸드레일은 수평·수직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특히 씻는 곳과 욕조에서의 이동동작을 위해 수직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핸드레일에 대한 세부사항은 KSED 11의 규정에 준한다.

17.6 비상벨의 설치

- 장애인의 이용을 배려한 욕실에는 비상벨을 부착한다.

KSED 18 샤워실

18.1 일반사항

-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서는 휠체어용 샤워 부스를 설치하고 샤워용 휠체어를 준비한다.
- 샤워실 또는 탈의실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와 출입구는 단차및 기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8.2 출입구

- 출입구의 폭은 850mm 이상으로 한다.

18.3 샤워부스의 크기

- 샤워부스의 유효 바닥면적은 900mm X 900mm 또는 750mm X 1500mm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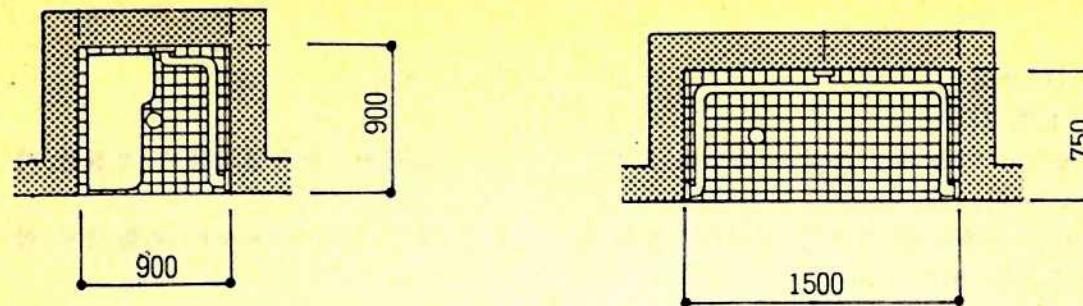


그림 18.3

18.4 핸드레일

- 부스내부에는 핸드레일을 수평 또는 필요에 따라 수직으로 설치한다.

18.5 바닥재료

-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한다.

18.6 샤워기및 수도꼭지

- 샤워기및 수도꼭지는 레버식등 간단히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8.7 샤워, 脫衣 벤치

- 샤워실 및 탈의실에는 벤치를 설치한다.

- 샤워실 및 탈의실 벤치의 높이는 휠체어의 앉은면 높이인 400mm~450mm로 한다.

KSED 19 카운터, 작업대

19.1 일반사항

- 공공시설등에서 탁자, 카운터, 작업대등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하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나 규격등을 고려해야 한다.

19.2 카운터, 작업대의 하부공간

- 카운터, 작업대 등의 하부에는 휠체어의 무릎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0mm 이상, 깊이 45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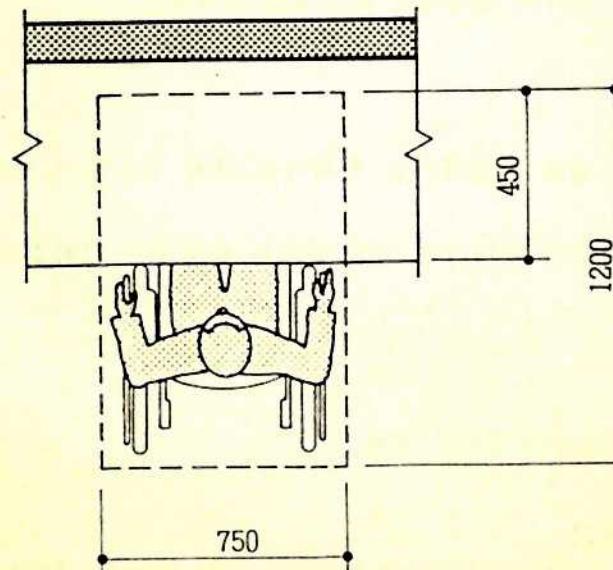


그림 19.2

19.3 카운터, 작업대의 높이

- 카운터, 작업대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700 ~ 800mm로 한다.

19.4 유효바닥 면적

- 탁자 및 카운터, 작업대의 이용을 위해서는 전면에 750 X 1200mm의 휠체어 유효바닥 면적을 확보한다.

KSED 20 수납시설

20.1 일반사항

- 캐비넷, 선반, 옷장, 벽장 및 서랍등의 수납시설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치수및 손잡이, 설치위치등에 유의해야 한다.

20.2 유효 바닥면적

- 휠체어사용자가 수납시설의 전면이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어도 750mm X 1200mm의 유효 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20.3 수납시설의 높이

- 수납시설은 휠체어사용자가 측면접근할 경우는 250mm~1300mm, 전면접근할 경우는 300mm~1200mm사이에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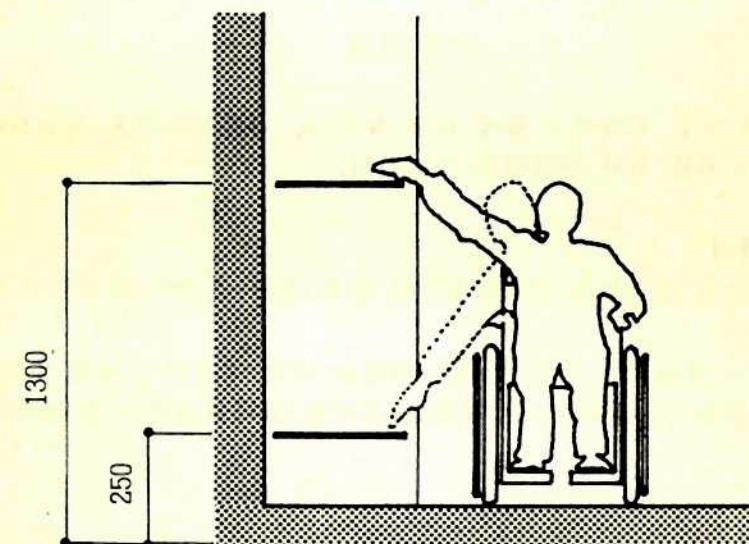


그림 20.3

KSED 21 관람석

21.1 일반사항

- 극장, 영화관, 콘서트홀, 운동경기장등과 같은 관람시설에서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1.2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800mm, 깊이 1300mm이상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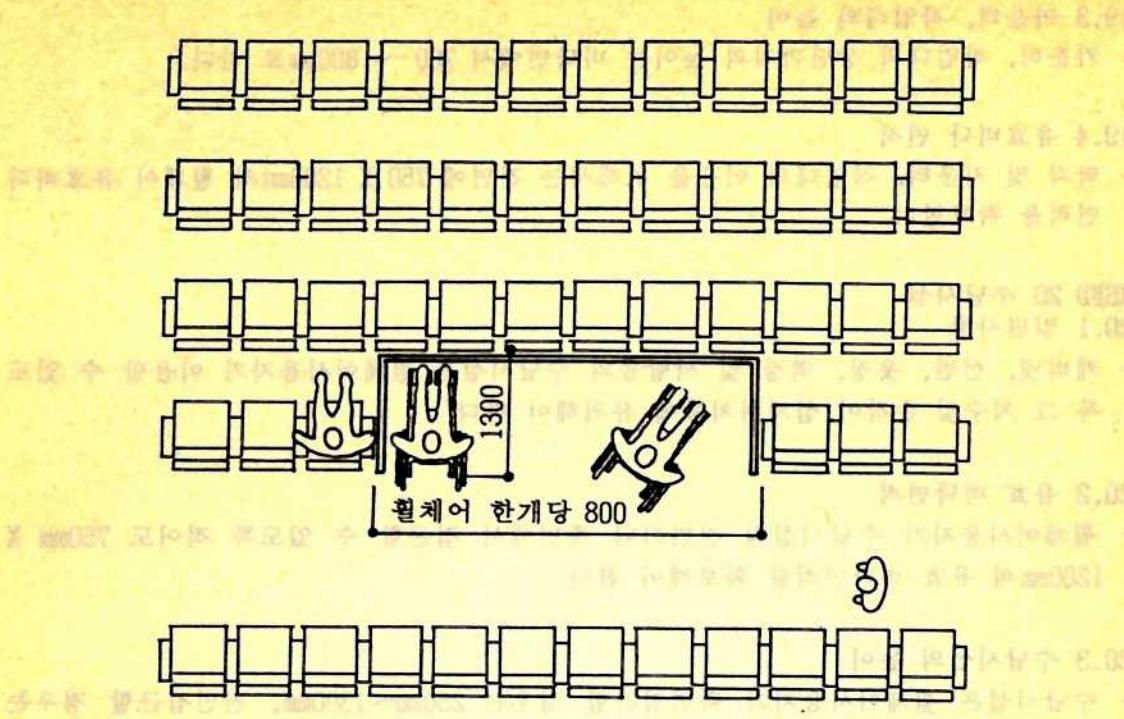


그림 21.2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가동식좌석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한다.

21.3 관람석의 배치

- 휠체어 사용자의 관람석은 지체부자유자 동료 또는 정상인 동료 옆에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은 비상시, 출구역 할을 하는 통로에 근접해서 배치한다.
- 관람시설의 비상출입구 옆에는 비상통로를 표시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KSFID 22 숙박시설

22.1 일반사항

- 숙박시설의 객실 중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객실은 침대를 설치한다.
- 장애인용 객실 내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욕실을 설치한다.

22.2 객실

- 객실 출입문의 유효폭은 850mm 이상으로 한다.
- 객실 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직경 1500mm의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침대의 높이는 휠체어의 앉은면 높이 400mm~450mm로 한다.
- 객실 내의 통로 폭은 900mm 이상으로 한다.
- 화장실, 세면대, 욕실, 수납시설 등은 KSFID 14, 16, 17, 20의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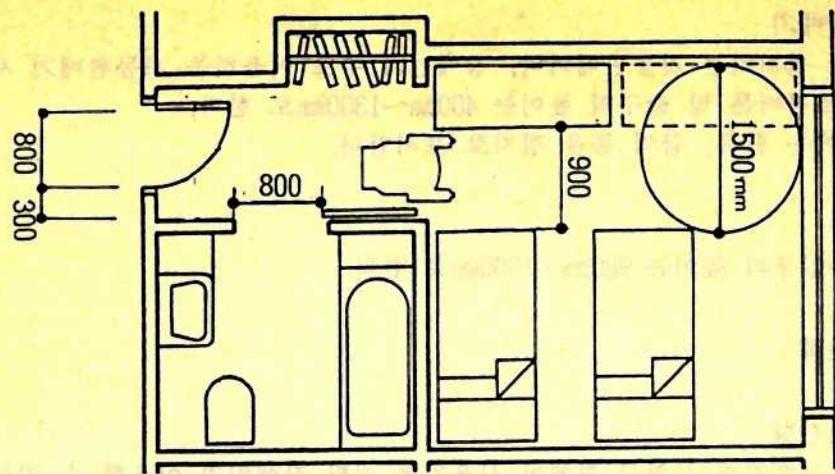


그림 22.2

KSFID 23 교통시설

23.1 일반사항

- 지하철 및 전철 등의 공공교통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수직 및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승강장 내부에 점자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휠체어 사용자가 교통시설의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수직동선상에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리프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2 개찰구 및 자동발매기

- 개찰구 중, 적어도 1개소는 유효폭을 900mm 이상으로 하고 유도용블록을 부설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찰구의 형식은 자동개폐형식으로 한다.
- 자동발매기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선지와 요금 등을 점자로 표시한다.
- 자동발매기의 현금투입구의 높이는 1300mm 이하로 한다.
- 자동발매기의 300mm 앞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23.3 승강장

- 승강장의 바닥마감은 미끄럼지 않고 평탄하고, 구배는 1/100정도로 완만하게 한다.
- 승강장의 가장자리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감지용블록을 부설한다.
- 승강장의 양단부에는, 높이 1100mm~1500mm정도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한다.
- 승강장의 벽면과 기둥 등에 붙어있는 간판, 기타부착물은 통행자에게 부딪히지 않게 한다.
- 승강장 내에 계단, 매점, 벤치 및 휴지통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KSFID 24 기타시설물

24.1 일반사항

- 자동판매기, 우체통, 공중전화 등의 전면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750mm X 1200mm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이러한 시설물은 KSFID 3의 규정에 준한다.

24.2 자동판매기

-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나, 장애인가 주로 이용하는 자동판매기 시설은 동전 투입구, 조작버튼 및 출구의 높이는 400mm~1300mm로 한다.
- 조작버튼에는 품목, 금액 등을 점자로 표시한다.

24.3 우체통

- 우체통 투입구의 높이는 900mm~1300mm로 한다.

24.4 공중전화

24.4.1 일반사항

- 여러대의 공중전화 설치시 휠체어 사용자와 기타 장애인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이상 설치한다.
- 공중전화는 휠체어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차 또는 방해물등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24.4.2 전화대의 설치높이

- 전화대의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 및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0mm, 깊이 450mm정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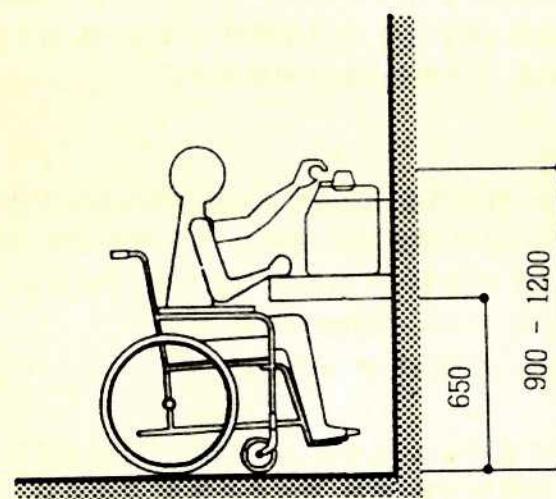


그림 24.4.2

- 동전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의 높이는 900mm~1300mm로 한다.

24.4.3 핸드레일

- 지팡이사용자및 하지장애인등이 몸을 지지할 수 있는 핸드레일 또는 벽면을 전화대 양측에 설치한다.

24.4.4 표시

- 장애인용 전화기를 설치한 경우는, 장애인 심볼마크를 부착한다.

KSFID 25 표시 및 안내

25.1 일반사항

- 비상시 안내문이나 목적하는 장소에 안전하게 또는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표시, 유도를 한다.

25.2 장애인을 위한 국제심볼마크

- 신체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국제심볼마크의 크기는 단변이 100-450mm정도가 바람직하고 설치장소는 원칙적으로 정상인용을 위한 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한다.
- 국제심볼마크의 색채는 흑색(또는 짙은 청색)과 백색이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국제심볼마크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그림 25.2

25.3 시각장애인 안내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 심볼마크를 부착한다.
- 문자와 기호는 크고, 굵은 글씨체로 하고, 그 바탕색과 대비가 되는 색으로 한다.
- 표시판은 휠체어 사용자가 보기 쉬운 위치, 높이에 부착한다.
- 조명은 역광이나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
- 필요에 따라서는 신호 또는 음성으로 유도한다.
- 안내판이나 표지판이 돌출되어 설치되었을 경우는 KSFID 3의 규정에 준한다.

25.4 측각에의한 안내

25.4.1 시각장애인용 바닥재

- 유도용 선형블록과, 감지용 점형블록등을 사용한다. 바닥재의 크기는 300mm X 300mm 및 400mm X 400mm의 블록을 사용한다.
- 선형블록은 유도방향과 선형돌기의 방향을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한다.
- 점형블록은 굴절부, 단차부분, 위험장소의 300mm전면에 부설한다.

25.4.2 점자안내판및 측지도안내판

- 시설의 배치가 복잡한 경우에는 출입구 부근에 시설 배치를 나타낸 점자안내판 또는 측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4.3 점자표시

- 핸드레일의 양단부 및 연속하는 핸드레일의 굴절부분에는 층수, 위치등을 점자 또는 기호로 표기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한다.
- 주요실의 문옆 또는 문손잡이에 실명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5 청각에의한 안내

25.5.1 유도벨

- 유도벨은 출입구 부근, 계단부근, 점자안내판 및 측지도식 안내판의 위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5.2 방송에 의한 안내

- 구내시설에는 방송설비를 설치하고, 적절한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5.3 인터폰

- 점자안내판 및 측지도식 안내판에는 역무실 또는 안내소에 연락할 수 있는 인터폰을 병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후원단체

振興會

레저신문

新時代金大成

사장 김정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8-17(동B/D 5층)
전화 : 565-0722~4, 565-0740
FAX : 565-0725

振興會大成電機產業社

大成電機產業社

代表薛龍錫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7가 98번지
(대지B/D 2층)
전화 : 922-1086, 929-2022
Fax : 922-1218

三 現 商 社

代表 金 和 淮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3-12(삼보B/D 4층)
전화 : 351-4282(代)
FAX : 387-4257

金剛鐵鋼株式會社

代表理事 朱 光 男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월드오피스텔 701호
전화 : 538-0001(代), 538-2435(直通)
시화코일센터 :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4다-502
전화 : (0345) 499-0001
Fax : (0345) 499-0006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서울강남지회)

회장 이장우

서울시 마포구 도화2동 538(성지빌딩 406호)
전화 : (02) 717-0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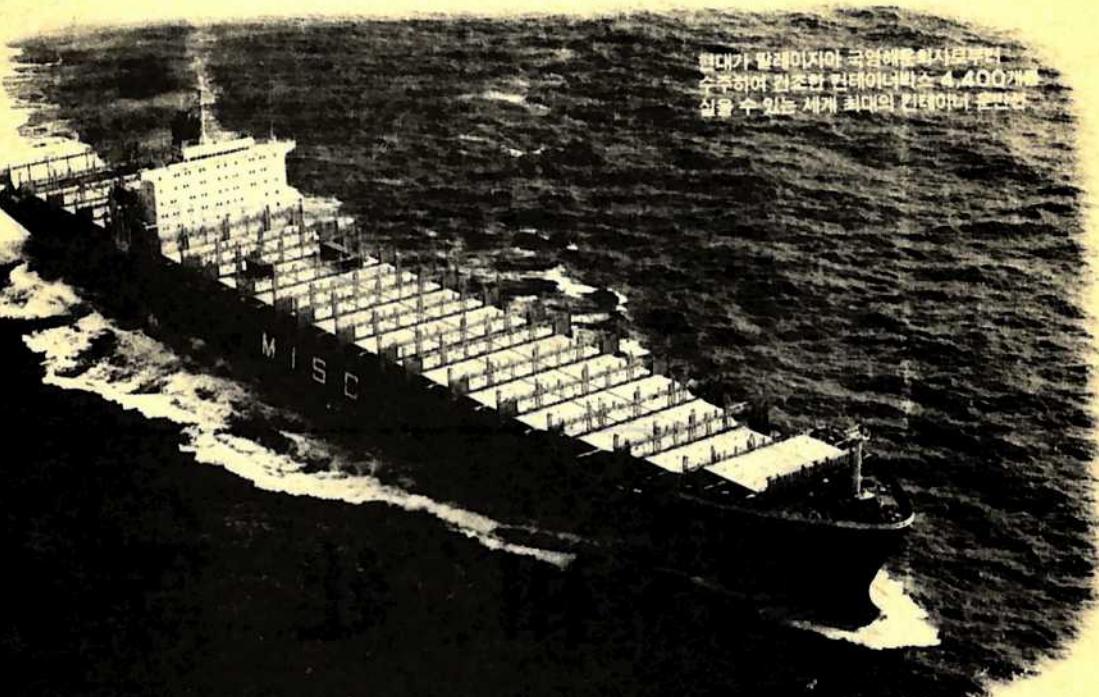
三 和 建 業

代表 金 根 柱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14-187(경남B/D 103호)
전화 : 498-3211~4
Fax : 498-3215

“수출을 많이 해야 나라도 튼튼해진대요!”

현대중공업 19년간의
(현대重工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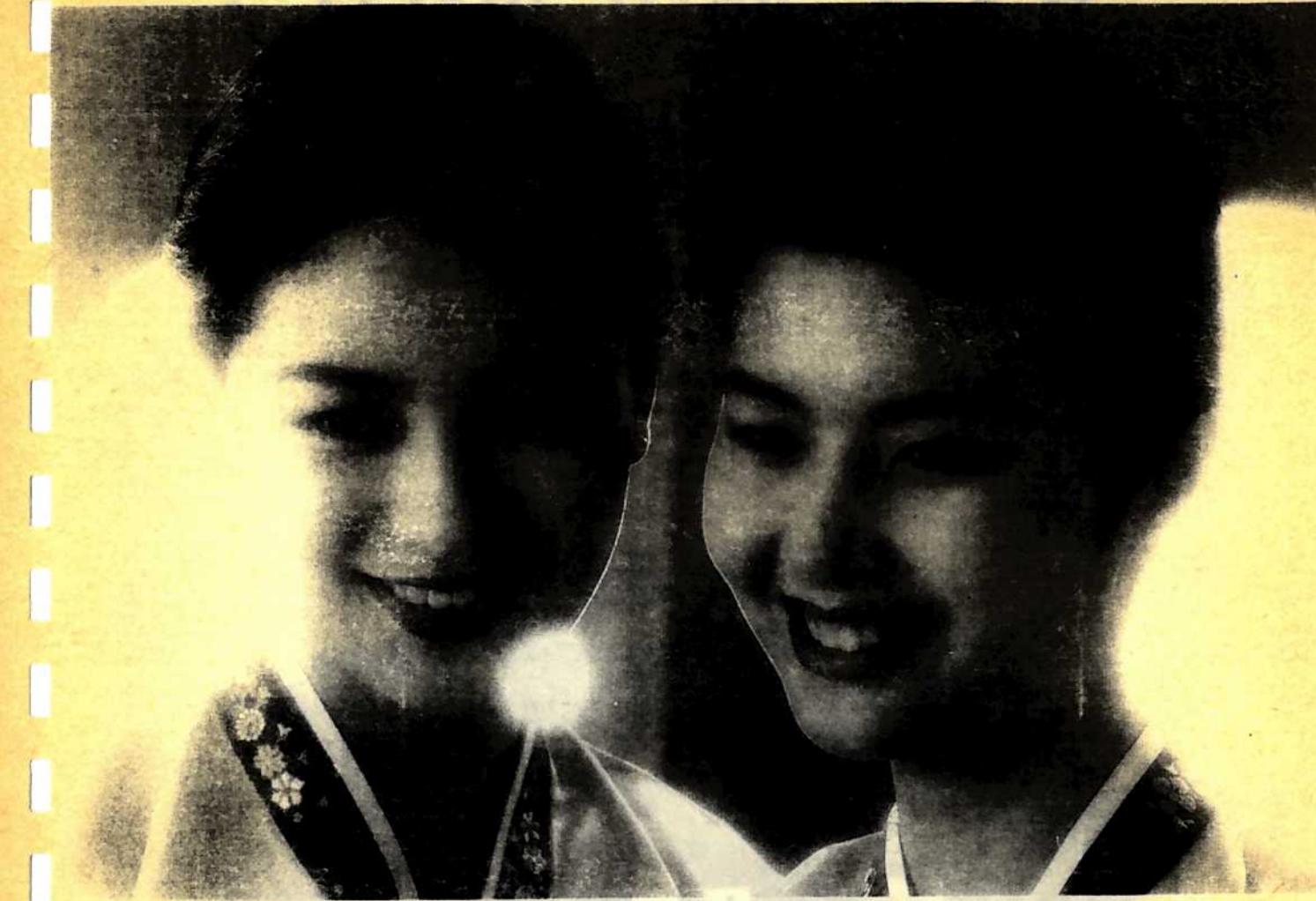
점점 높아만 가는 무역장벽,
계속되는 국제 경제의 침체,
수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요즈음
하지만 경제가 침체되었던 작년에도 현대중공업은
22억불이나 수출했습니.

무역수지 흑자도 16억불이나 기록했다니
현대중공업만한 회사가 3개만 더 있었어도
작년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흑자였을텐데…

올해 수출 목표는 25억불인데,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목표달성을 무난할거라는 아빠에게
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선생님 말씀이 수출을 많이 해야 나라도
튼튼해 진대요.”

미래를 개척하는
현대중공업



여행을 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신지요?

**대한항공이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50% 할인 혜택을 드리며, 전담직원이 직접 모십니다

장애인 수첩만 제시하시면 국내선 모든 구간에서 요금을
50% 할인해 드리며, 3급 장애 이상일 경우에는 보호자 1명도
같이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출발공항에서 도착공항까지, 탑승수속은 물론 기내까지
전담 직원이 편안하게 도와드립니다.

장애인을 위한 대한항공 특별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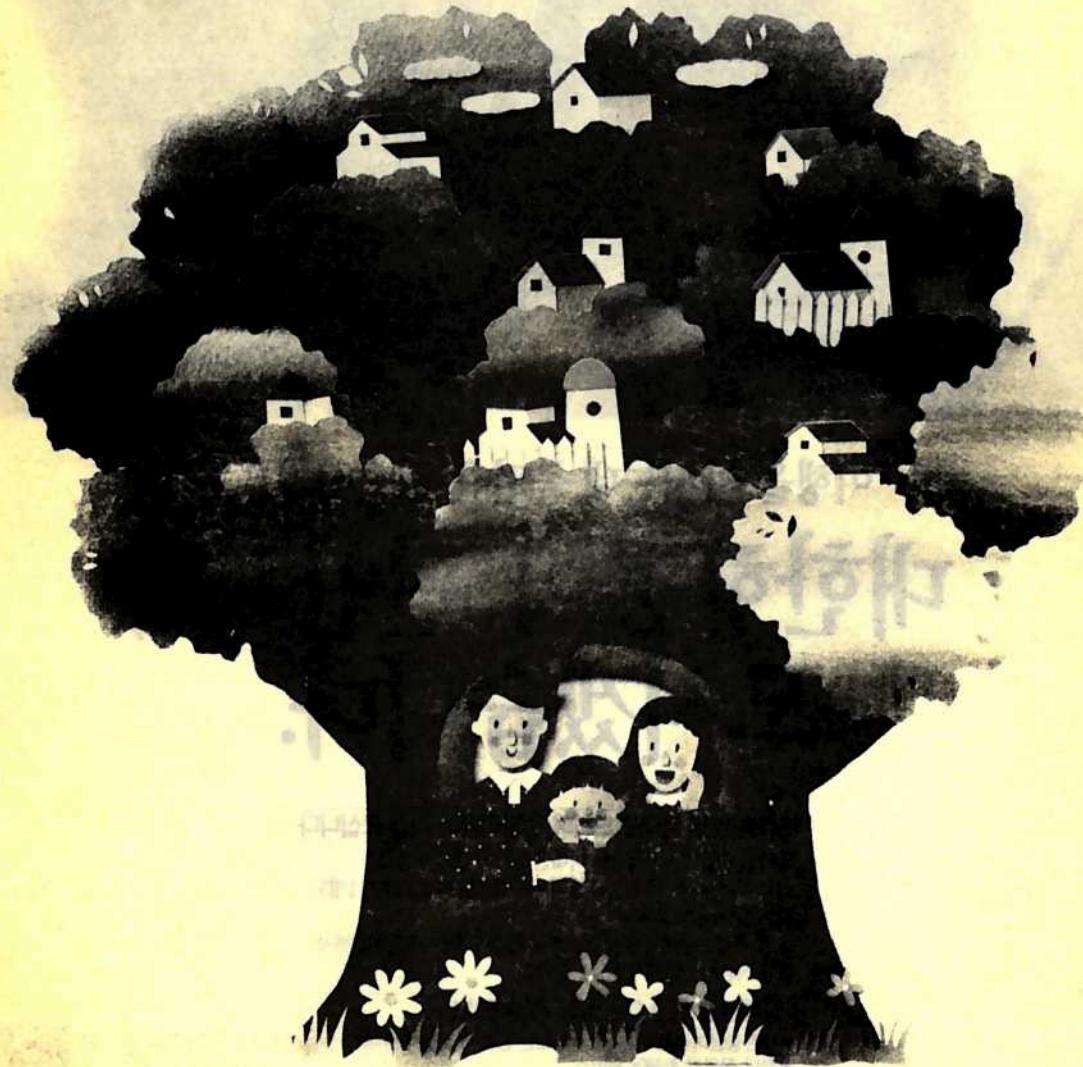
-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국내외 모든 공항에 전담 직원 배치
- 전담 직원의 휠체어 서비스
- 일반 승객보다도 우선적으로 탑승
- 희망좌석 우선 배정
- 기내시설물 이용 시 승무원 특별서비스

우리의 날개
DA **한 항 공**
■ 예약: 전화 (02) 756-2000 팩시/텔레 (02) 775-3012

풍요한 내일을 위하여!

알뜰한 엄마와 성실한 아빠가
오늘 열심히 일하고 아끼는 것은
풍요한 내일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밝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2세들에게 풍요한 삶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땀흘리고 알뜰히 절약하시는
고객여러분들에게 저희 서울신탁은행은
밝고 풍요로운 내일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신탁은행

밖에서 쓰이는 "한글라스"

막은유리
미닫이유리

새우리 바사우리 파스텔유리
곡유리 스파드러유리
나노유리

에코지 창문 유리
로이유리 보초유리
곡유리

인천을 보듬어
가화유리 저항유리
나노유리

맑고 깨끗하며 디자인 유리
마블라이트
풀

도어유리 제조용 접착제
PRC-428H SM-4000H

유리보관 신소재 폴리카보네이트
렉사
레인

안에서 쓰이는 "한글라스"

아늑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무늬유리 색무늬유리

빛과 안전이 함께 요구되는 곳에
파이로가드 철망유리

조명, 의약, 전자, 이화학용 원자재
그라스메이트 소다간유리 베트유리
불규산유리 연유리

보온, 보냉, 단열, 흡음용 유리섬유
아니솔 매트 배트 파이로마마
보드 이글루 마데마매트

조용하고 폐쇄한 공간을 위한 유리섬유 천정재
아니솔

전자파를 차단시켜주는 디층구조의 유리필터
스파크

보이는 곳에도 "한글라스"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한글라스"

저희 본사나 영업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본사 / 785-0311 (경인영업부)
대전영업소 / 621-4538 · 광주영업소 / 525-9711 · 대구영업소 / 425-1241
부산영업소 / 462-0311 · 경북영업소 (김동) / 647-1051

"보이는 곳의 "한글라스"
보이지 않는 곳의 "한글라스"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악어의 매력시리즈 - 명성편

“스네일볼” 챔피언 나세마루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의 운동선수로 그야말로
한국인으로 활약하는 운동선수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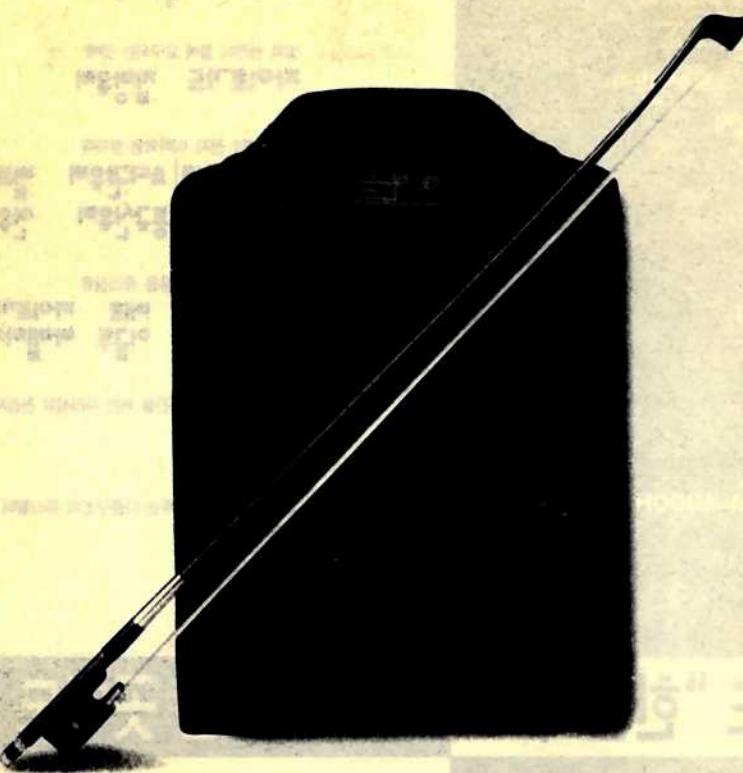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제작: 대우주도 채집 기관: 제작: 대우

서광모드



고전주의, 낭만주의 … 그리고

라코스떼 主義

오래 전통으로 역사의 향기를 더해가며 삶에
여유를 주는 명품처럼, 라코스떼는
세계명사들의 찬사로 그 명성을 더해왔습니다.
각지각지한 각종 스포츠대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명한 스포츠인이라면 대개 악어마크
와 두벌씩은 갖추어 입었으며, 아이젠하워,
시스카르데스탱, 레이건 등 세계의
유명인사들도 직무를 벗어났을 때는 항상
라코스떼와 함께 하곤 했습니다.
59년을 이어온 라코스떼 –
그 명성은 지금도 세계 80여나라 멋쟁이들의
사랑으로 길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신속·실리·신뢰



영업안내

- 여권발급 신청대행 업무
- 각국 비자발급신청 무료대행 업무
- 항공권 예매(국제선 국내선)
- 각종 해외여행 관련상담 및 일선
- 기독교 성자순례 여행행사
- 해외신혼 여행주최 상품판매
- 각국유화 및 연수상담 및 일선
- 배낭투어 기획상품 판매
- 각국 호텔예약 및 판매
- 각종 여행보험 취급

大明觀光株式會社
DAEMYUNG TOUR SERVICE CORP.

02-515-51500 세종로 101호 흑석동 68번지 (대한민국 031)
TEL(02) 732-0853(FAX) FAX(02) 732-0755

대교여행 대교여행 관광여행사 관광여행사 관광여행사



대교여행
대교여행
대교여행

고객은 스승



작은 의견도
크게 듣겠습니다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활속에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
럭키금성은 아무리 작은 의견도
소중하게 듣고 배워서 보다 큰 만족으로
되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럭키금성

얼룩탐지입자와 얼룩제거 표백입자의
하이테크 고밀도 세제!

고밀도

새하양 표백효과

3개
선택권

75회분

4반세기 고합그룹,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



構造再構築(STRUCTURING) 완성으로 세계무대를 향한 국제경쟁력 창출.

한국의 실에서 출발해 불가능에 도전하는 강한 집념으로
4반세기에 걸쳐 미래첨단 산업을 개척해온 고합그룹
마침내 세계 제1의 종합경쟁력을 목표로 울산에
構造再構築 공장을 완성하였으며 석유화학, 수지, 합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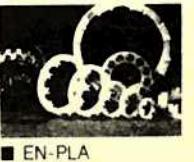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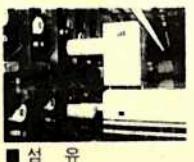
직물의 결합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합으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제 고합은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하여 전자, 전자통신,
신소재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과 유통, 금융,
정보, 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실현에 이바지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힘차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高合그룹

본사: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 계열사: 고려합섬(주), 고합상사(주), 고려종합화학(주), 고려석유화학(주), (주)고합-악소, (주)고합엔지니어링, (주)한국 텍사코트



■ 석유화학

■ 수지

■ 섬유

■ 직물

■ EN-PLA

■ 전자·통신